

<p>(議事棒 3打)</p> <p>.....</p> <p>(參 照)</p> <p>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p> <p>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p> <p>안 제5조제1호중 “2,500만원(법인은 1억원)”을 “400가마/80kg(법인은 2,000가마/80kg)”으로 한다</p> <p>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1호중 “500가마/80kg”을 “400가마/80kg”으로 한다.</p>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p> <p>서울특별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p> <p>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통산업발전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개설자 등에 대한 권고(대규모 점포와 그 인근지역의 도·소매점포간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조정) 2. 유통산업발전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 등에 대한 권고 3. 기타 유통산업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 3 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지역경제국장이 되고, 위원은 서울특별시 소비자보호과장, 중소기업과장과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에 위촉하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의 임직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소비자단체의 대표 3.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서울특별시 지역의 소비자 <p>제 4 조(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p>제 5 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p> <p>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소비자보호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 6 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 7 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상권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제 8 조(간사) ①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서울특별시 소비자보호과 상정계정이 된다.</p> <p>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p> <p>제 9 조(회의록)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p> <p>②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p> <p>제10조(수당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유동근대화추진위원회조례 및 서울특별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제1호 대지 제6호”를 “제1호 대지 제7호”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서울특별시가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관리위탁을 한 공원(이하 “위탁공원”이라 한다)”를 “서울특별시가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관리위탁을 한 공원 및 시장이 법 제6조제1항·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 설치를 인가한 공원(이하 “위탁공원”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동항제7호를 제8호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직영공원과 위탁공원에 입장하는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참전용사증을 소지한 참전용사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관리실장과 위촉위원중에서 호선한 1인이 된다.

별표1 서울대공원란중 놀이동산(서울랜드)와 오동공원(드림랜드)란의 사용기준란과 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대공원	놀이동산 (서울랜드)	어 른 1회	5,000
		청소년 1회	3,500
		어린이 1회	2,000
오동공원 (드림랜드)		어 른 1회	1,500
		청소년 1회	900
		어린이 1회	700

별표2 남산공원란중 전망대입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남산공원	전망대입장	어 른 1회	2,000
		청소년 1회	1,200
		어린이 1회	1,10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7. 서울特別市女性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8. 서울特別市看護助務士資格證試驗應試및資格證再交付手數料徵收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5時 52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特別市女性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과 의사일정 제17항 서울特別市看護助務士資格證試驗應試및資格證再交付手數料徵收條例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保健社會委員會 林靜枝議員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靜枝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保健社會委員會 소속 林靜枝議員입니다.

제99회 임시회중 우리 保健社會委員會에서 심사의결한 서울特別市女性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과 서울特別市看護助務士資格證試驗應試및資格證再交付手數料徵收條例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特別市女性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여성위원회에 둘 수 있는 서기의 직명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여성위원회 서기 중 1명을 시정개발담당관 여성정책계장에서 여성정책담당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서울特別市看護助務士資格證試驗應試및資格證再交付手數料徵收條例案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의 응시 및 자격증 재교부에 대한 수수료 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保健福祉部승인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타 시·도 및 유사직종의 경우를 감안